

|       |              |
|-------|--------------|
| 의안번호  | 2209751      |
| 의 퇴 인 | 임호선 의원       |
| 회 답 일 | 2025. 5. 27. |
| 추계번호  | 25B2243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2조의2<br>(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 의무규정 |
|    |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3항)<br>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개발<br>2. 전통주 등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br>3. 전통주 등의 특허출원 및 사업화 촉진<br>4. 전통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br>5. 전통주 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br>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
|    |                               |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4항)                                                                                                                                                                                                                  | 재량규정 |
|    |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12조의2<br>(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및 비용 출연·보조(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으로 아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개발
    2. 전통주 등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3. 전통주 등의 특허출원 및 사업화 촉진
    4. 전통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전통주 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다만, 개정안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진흥원의 규모, 소재지, 사업운영 방식 등 진흥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유사한 사례로 「한식진흥법」 제16조<sup>1)</sup>에 따른 한식진흥원의 운영 사례가 있음
  - － 한식진흥원은 한식분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의 수행을 위

1)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5년 기준 운영비는 147억 8,000만원(임차료 등 포함)임

※ [참고자료 1] 한식진흥원 개요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박인재 | 김신애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박인재 | 02-6788-4650 | powerreset@nabo.go.kr |

## [참고자료 1] 한식진흥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 설립 목적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설립근거: 「한식진흥법」 제16조)

### □ 주요 연혁

- 2010년 3월 한식세계화 추진 전문기관으로 한식재단 설립
  - \* 2012년 5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 2015년 0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17년 12월 기관명칭 변경(한식재단→한식진흥원)
- 2019년 08월 한식진흥법 공포(시행 2020년 8월)
- 2020년 11월 한식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 2021년 10월 한식복합문화공간 이음 통합 이전(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 2022년 08월 한식복합문화공간 이음 개관

###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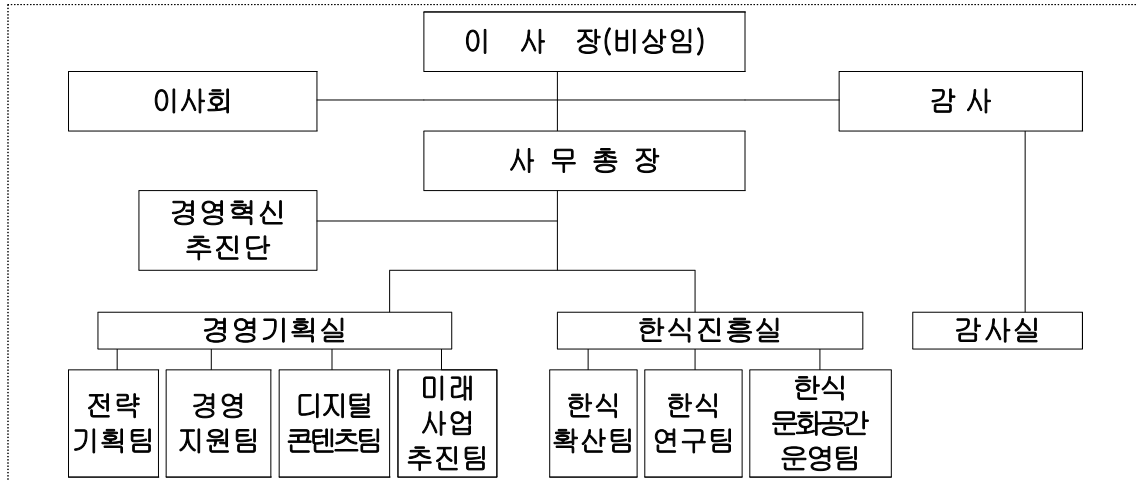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한식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한식 산업 연구·조사, 한식기록 DB집적 등),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등
  - (K-미식 붐 활성화) K-미식벨트 조성, 한식 콘텐츠 종합 홍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영 셰프 발굴 육성, 한식문화공간 운영 등
  - (향토음식 진흥센터)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등

## □ 조직도

- 이사장(비상임), 사무총장 총괄 하에 3실, 1단, 7팀으로 구성·운영

### < 조 직 도 >

(‘25. 5월 현재 기준)



\*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명(당연직 3, 선임직 8)으로 구성·운영

## □ 2025년 예산

- (예산)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위탁사업으로 운영

(단위: 백만원)

| 정부예산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 코드  | 내역사업명       | 세목명    | 세목 코드  | 예산     |
|-----------------|----------|-------------|--------|--------|--------|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2837-332 | 한식진흥 기반의 조성 | 민간경상보조 | 320-01 | 7,329  |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2837-332 | K-미식 붐 활성화  | 민간경상보조 | 320-01 | 2,701  |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2837-332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 민간자본보조 | 320-07 | 4,600  |
|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 2835-304 | 해외 한식요리경연대회 | 민간경상보조 | 320-01 | 150    |
| 총 예산            |          |             |        |        | 14,780 |

## [참고자료 2]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상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소요예산(안)

※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마스터플랜 연구’ 결과 중 발췌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견을 참고용으로 인용함

### □ 주요가정

- (기능에 따른 대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R&D 연구 기능을 직접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R&D 연구 기능은 타 기능에 비해 장비, 인건비, 연구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한편, 단기에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설립·운영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연구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초기 운영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기능의 분류 >

| 기능            | 구분 | 1안                | 2안             |
|---------------|----|-------------------|----------------|
|               |    | 전통주산업진흥원 기본업무+R&D | 전통주산업진흥원 기본업무  |
| 1. 기술지원·품질관리  |    | ✓                 | ✓              |
| 2. 제도·정책지원    |    | ✓                 | ✓              |
| 3. 교육 및 인력 양성 |    | ✓                 | ✓              |
| 4. 홍보·마케팅     |    | ✓                 | ✓              |
| 5. R&D 연구     |    | ✓                 | R&D 연구는 기획·관리만 |

- (조직 및 인력 운영)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의 4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5개 조직(팀) 35명의 인력규모로 산정함.
- (단계별 인력 운영) 전통주산업진흥원 인력 구성은 1기 정립기(1-3차년도)에는 30명이지만, 2기 도입기(4-6차년도) 35명, 3기 성장기(7-11차년도)는 39명, 4기 확장기(12-21차년도) 46명으로 1기 정립기 대비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산정함.
- (예산 건축비) 새로운 부지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의 부지 규모는 6,000㎡(1,815평)로 가정함.
- (장비구축비)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장비구축비는 1안(R&D 직접 수행)의 경우 56.4억원이며, 2안(R&D 위탁)의 경우 21.8억원임.
- (사업비)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사업비는 1안(R&D 직접 수행)의 경우 약 39.7억원, 2안(R&D 위탁)의 경우 약 34.4억원임.

□ 소요예산(안)

-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의 소요예산은 1안(R&D 직접 수행)의 경우 약 199.8억 원, 2안(R&D 위탁)의 경우 약 119.2억 원임.

< (가칭)전통주산업진흥원 소요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 설립 시 소요예산(억 원) |       |           |        |       |     |       |        |
|-------------------|----------------|-------|-----------|--------|-------|-----|-------|--------|
|                   | 초기도입비          |       |           |        |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 합 계    |
|                   | 부지<br>매입·조성비   | 공사비   | 장비<br>구축비 | 소계     |       |     |       |        |
| 1안<br>(R&D 직접 수행) | 1,386          | 6,954 | 5,640     | 13,980 | 1,750 | 286 | 3,967 | 19,983 |
| 2안<br>(R&D 위탁)    | 1,386          | 3,527 | 2,182     | 7,095  | 1,150 | 230 | 3,442 | 11,917 |

주: 경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총 예산의 5%를 가정함.